

#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2014. 9.

서비스산업총연합회

## - 목 차 -

I . 서론 .....	1
1.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	1
2. 새 경제팀의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 .....	3
II .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기본방향 .....	5
III . 서비스산업 분야별 세부 정책제안 .....	9
1. 보건·의료 .....	9
2. 관광·의료관광 .....	11
3. 소프트웨어·IT서비스 .....	13
4. 학원 .....	15
5. 디자인·공간디자인 .....	16
6. 광고 .....	18
7. 엔지니어링 .....	19
8. MICE(국제회의기획)·전시주최자 .....	19
9. 프랜차이즈 .....	21
10. 미술 .....	23
11. 골프 .....	25
12. 연구개발 .....	26
13. 지식재산서비스 .....	28
14. HR(인적자원서비스) .....	30
15. 케이블TV .....	32
16. 리츠 .....	33
17. 기타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 등 .....	35

## I. 서론

### 1.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운용에는 한계
    -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수출제조업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기존의 경제운용 방식은 한계에 봉착
    - 고용측면에서도 제조업은 1991년 516만명으로 고용 정점에 이른 후 2013년 418만명까지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
  - 임금상승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의 부진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
    - 특히 6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규모\*와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의 지속으로 기업의 투자행태가 보수화됨에 따라 계층간 양극화가 확대되고 낮은 소득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복지 확충 요구가 점증하는 등 경제·사회적 문제의 악순환 지속
- \* 591만명(14.3. 기준)
-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분배 개선, 양극화 해소, 가계부채 및 복지확충 요구 등의 문제 해결 가능

-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민간 투자에 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 민간 투자는 수익창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투자→수익→성장→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기조 지속 필요
  
- 내수기반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2013년 69.8%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59.1%로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저부가가치·저임금업종은 과잉진입으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고부가가치·고임금업종은 경쟁제한적 규제로 인한 국내 안주 등으로 대다수의 서비스업이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긴요
  - 서비스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택하여 비합리적 규제를 혁파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 필요
  - 제조업을 세계 최강 수준까지 올려 놓은 전략과 정책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하여 기존 제조업 우대의 결과로 나타난 서비스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

## 2. 새 경제팀의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2014. 1. 6.)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키로 발표
-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2014. 7. 24.)하면서 한국 경제를 내수 회복 부진, 세계경제 둔화 및 경쟁국 추격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진단
  -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과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포함한 경제혁신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5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콘텐츠와 물류를 추가하여 7개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4. 8. 12.)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7개 유망서비스 분야별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구체화, 제도개선·기반조성을 위한 총 135개의 세부 과제 발표
- 새 경제팀의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대책은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
  -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확대는 일자리 증가 및 가계소득의 증대로 연결되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도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건의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에 일조하고자 함

\* 2012. 9. 설립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건의(2013. 1.),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2013. 10.), 조달제도 개선 건의(2014. 4.) 등 활동 수행

## II.

##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기본방향

###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마련 필요

-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추진 상황 점검 및 여러 정부 부처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
- 기업, 사업자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 구성원이 고루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도입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결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법정단체화

-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서비스산업 업계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되었으나 법정단체가 아닌 일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역할 수행에 한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 당시 (2011. 11) 법정단체로 총연합회를 설립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부처협의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이 산업발전법 제38조(사업자단체)와 중복적이라는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2011. 12.)하여 국회 제출(2012. 7.) 시 삭제

- 총연합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 업종 및 투자자산 종류 정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지원 대상 업종은 1차 산업(농업, 어업, 광업 등), 2차 산업(제조업, 건설업 등)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물류, 도소매, 전기통신, 엔지니어링, 인력공급, 포장 등) 등이나 제조업의 경우 세부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경우 지원 대상 업종을 나열\*하면서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물류, 도소매, 전기통신, 엔지니어링, 포장 등 37개 업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금융, 교육(컴퓨터 교육은 포함), 게임 등 여러 서비스 업종 제외

- 지원 투자자산은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정하고 있으나  
① 토지, 건물·건축물 ② 차량·운반구 ③ 공구·기구·비품  
④ 선박, 항공기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기계설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일 서비스업종 내에서도 같은 자산임에도 용도\*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등 제도 정비 필요

\* 일례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항공기와 선박(선박의 경우 중소기업만 지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여객 운송 서비스에 필요한 항공기 또는 선박을 구입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고용 우수기업 대상 공제율 우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은 기업규모 및 투자 지역에 따른 기본공제(1~4%)와 고용증가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최대 3%)로 구분 적용
- 투자의 내용보다 투자로 인해 얼마나 고용이 창출되었는가에 따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가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



○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폐지

- 공장용지(도시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 없이 재산세(0.2%)만 부과하는 반면, 서비스업용 토지는 0.2~0.4% 재산세 이외에도 종부세(0.5~0.7%)를 추가적으로 부담
-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등 특성상 부동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 필요

## □ 국가계약제도 개선

- 정부 계약을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대상물을 물품(제조), 공사 및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용역의 경우 제조업 및 공사 계약에 비해 일반관리비율, 경비항목 수, 이윤율 및 지체상금 등에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

\* (일반관리비율) 제조 : 6~14%, 공사 : 6%, 용역 : 5%  
(경비항목수) 제조 : 22개, 공사 : 26개, 용역 : 8개  
(이윤율) 제조 : 10~25%, 공사 : 15%, 용역 : 10%  
(1일 지체상금) 제조 : 0.15%, 공사 : 0.1%, 용역 : 0.25%

- 차별적인 원가 산정 기준 철폐를 통해 용역 조달사업에 대한 적정 경비 및 이윤율 등을 정책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육성 도모

- 용역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단순용역과 지식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계약 인건비가 정부에서 정하는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 제한

- 제조 및 공사조달사업의 인건비 단가 기준과 같이 시장평균가격을 조사하여 용역 조달에 대한 인건비 단가로 활용할 필요

- 국가계약법에 의한 최저가 낙찰 원칙이 용역 조달사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입찰 시 질적 적정성에 대한 고려 부족

- 일반 입찰 위주의 현행 관행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 경쟁입찰 제도를 활성화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어 입찰업체 평가 (2단계 경쟁입찰) 1차 규격입찰을 통해 전문성 및 기술성 평가 후 2차로 가격 입찰 실시

### III. 서비스산업 분야별 세부 정책제안

#### 1. 보건·의료

##### □ 병원 해외진출 지원

- 국내 병원은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111개 의료기관이 19개국에 진출\*하였으나, 이 중 20%가 현지화 실패, 낮은 수익성,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 등의 사유로 철수를 고려

\* 중국(38), 미국(36), 베트남(8), 몽골(8), 카작(5), UAE(2), 러시아(2) 등

- 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면허, 병원 설립 인허가, 의료기기 인증 및 통관제도 등 진출국에 대한 진출 장벽 완화 및 진출 병원 보호
- 국내병원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할 경우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필요
- 정부의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진출국에 대한 법·제도 및 현지 파트너 등 정보 제공
-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및 기금 조성을 통한 맞춤형 보증 등 금융지원
- 홍보·마케팅, 배상책임보험 등 해외진출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 필수의료 부문(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 해외 환자 유치 지원

- 국내 병원은 2013년말 기준으로 21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총 3,934억원의 진료수입을 거두었음

\*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에서 주로 유치

-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기준 완화

- 현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유치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일 것 등 설립 기준이 까다로운 상황임에 따라 진입장벽 완화 필요

\* 성실공익법인 주요 조건

- ① 운영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5분의 1을 초과 않을 것
- ③ 외부감사 이행(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감사반)

### - 의료전문 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마케터 등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확대

### - 한국의료의 우수성에 비해 낮은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

### - 일회성 의료관광을 넘어 일반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 2. 관광 · 의료관광

### □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 국내여행 주요 수요자인 국민의 관광 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부족
  - 철도여행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여행객을 위한 관광안내데스크 설치 필요
- 최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수학여행 수요 급감
  - 국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각종 대책('수학여행 전면금지' 등) 발표 이전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필요

### □ 의료서비스 가격 공개

- 의료관광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인 의료서비스 가격이 미공개되고 있어 의료관광상품의 가격이 과다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해외 환자 피해발생 및 의료관광에 대한 불신 초래
- 의료서비스 가격을 공시하도록 제도화 하는 한편, 의료관광 표준상품을 선정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

### □ 의료사고 대비 보험 개발

- 해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가 개별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상요구를 해야 하는 등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음
- 해외 환자 의료사고 대비 보험 개발이 필요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

□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유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또는 면세) 적용

-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행위(미용목적 수술 포함)를 수출과 동등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또는 면세)할 필요

\* 의료관광 유치업자에 대해 2010년 및 2011년 2년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시 적용한 사례 있음

□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용 확대

- 2013년부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국가기술자격화 하고 자격 보유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나 해당 인력에 대한 의료기관, 유치업체 등 의료관광업계의 활용도가 낮음
-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고용 의무화를 통해 의료관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연수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

### 3. 소프트웨어·IT서비스

- 장기사업 및 장기계속 계약 제도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안정화
  - 일괄서비스 방식 사업 적극 도입
    -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이 창의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정부 등이 승인할 경우 제안 기업이 시스템·솔루션 구축 및 정부 등의 사용기간동안 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 일체를 수행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의 장기계속 계약 제도 적극 활용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의 단년도 계약 관행은 매년 입찰 실시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의 방해요소로 작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기 규정되어 있는 장기계속 계약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시스템 특성에 따라 장기 계약 체결 장려 필요
    - 계약가액을 지급할 때 건설 조달과 같이 기성고에 따라 사업자의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표준단가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상향 등 정부의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정책'이 2014년부터 시행
    - 동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 정보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수립 노력 필요
  - 소프트웨어 기업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을 통해 노하우 축적, 안정적 고용 유지 및 R&D 투자 여력 확보 등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 필요

- 정부 정보화사업의 사업기획·발주·사업관리 방식의 합리화
  - 요구사항의 잦은 변경과 이에 따른 변경대가 미지급, 발주처 인근 작업장 설치 등 정보화사업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필요
  
- 금융IT 인력 규제 해소
  - 금융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취지로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을 통해 인력 비율을 규제
    - 금융회사 내부 인력과 외부인력 비율 규제(5:5) 및 위탁사업자 인력과 재위탁사업자 인력 비율 규제(5:5)
  - 내부인력 비율과 금융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은 상관관계가 낮음
    - 효과적인 보안 강화 방안은 보안 정책 수립, 보안활동 수행, 보안활동을 지원하는 인적·물적 역량 확보 등 총괄적인 통제 역량 강화임
  - 무의미한 IT인력 구성 비율 규제를 실질적인 보안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사 보안활동 점검방식으로 변경 필요
  
- SW가 접목된 비즈니스 모델 제공·혁신 촉진
  -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 필요
    - \*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SW 접목을 통해 국가시스템의 변혁,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및 우주·원자력·바이오산업의 SW역량 강화 전략을 포함
  - SW가 접목된 비즈니스 모델의 제공·혁신\* 촉진 필요
    - \* 카카오톡(제공 사례) 및 애플社 아이폰·아이튠즈·팟캐스트(혁신 사례)
      - 비즈니스 모델 특허 거래소 설립, 서비스 R&D 방법론 개발·보급 등 기반 조성 필요
      - 우수사례 공모·포상사례집 발간 등 SW활용 비즈니스 사례 확산



---

## 4. 학원

---

### □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해당 강사가 법무부에 회화지도사증(E-2) 발급 신청 시 제출하였던 서류를 포함한 다수의 서류를 교육청에 15일 이내에 등록·통보하여야함
- 동일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교육청간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30일로 연장할 필요

### □ 교습 시설 기준 개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의 면적, 시설, 일시수용인원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동 기준은 자유로운 학원 설립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자재와 시설의 숫자만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교습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고시, 자격증 등 성인 대상 강좌의 경우 수강인원 제한으로 필요 강좌에 대한 수강생의 강좌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

## 5. 디자인·공간디자인

- 디자인 전문매장 설치·운영 및 전문 시장 조성을 통한 디자인산업 인식 제고 및 디자인 제품 판매 지원
  - 디자인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증대 효과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디자인 활용도는 12%에 불과(디자인진흥원)하며, 낮은 활용도로 인한 디자인 전문회사의 영세성 및 과당경쟁 심화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는 등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 초래
  - 국내외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있는 디자이너를 소개하고 디자인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문매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시장을 조성하여 홍보 및 지원할 필요
  
- ‘서비스디자인 창업스쿨’ 개설을 통한 디자인 관련 서비스 창업 교육, 연구 및 유통 등 창업지원의 일원화
  - 스탠포드 대학은 디자인창업스쿨인 ‘D-School’이 있어 디자인과 융합한 서비스 창업을 윈스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처럼 우리나라도 ‘서비스디자인 창업스쿨’의 개설을 모색해야 할 필요
  - 정부 지원금을 창업 기업에 투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가 서비스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투자 실시
  - 창업 준비과정부터 시장과 밀접한 환경에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제고

- 공간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마련 필요
  - 제조업에 대한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디자인만 규정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 전반을 다루는 「디자인진흥법」으로 개편할 필요
  - 공간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 전문인력 양성 및 신고제, 품질 인증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 추진 필요
    - 창업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디자인 혁신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표준 노임단가 및 사업대가 기준마련 등 공간디자인 분야 입찰제도 개선 필요
    - 중장기적 산업 연구, 해외 진출 지원·촉진 및 공간 디자인 활용 지원금 등 공간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필요
  
- 국가 디자인 전략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국가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

## 6. 광고

---

- 광고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산업진흥 도모
  - 정부의 광고정책 담당부서는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 문화체육관광부(지면광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 안전행정부(옥외광고), 미래창조과학부(스마트기기·온라인·통신광고)
  -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다양한 매체를 총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범정부 광고 정책 협의체 마련이 필요
  
- 광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흥기금 설치
  - 광고는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큰 지식기반산업으로 국내 광고시장은 2013년 총 9.8조원으로 세계 11위 규모로 성장
  - 광고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광고인력 수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경력자위주 채용 관행이 정착되고 이는 청년층 유입 감소와 부실한 사내 재교육→기획·크리에이티브 등 핵심 인력 소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 핵심인재 양성 교육, 연구 등 광고산업 관련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산업경쟁력 배양 필요
  
- 공익광고 규모 확대를 통한 광고산업 시장 확대 필요

---

## 7. 엔지니어링

---

- 정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대한 적정 대가 보장
  - 정부 수요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대가는 발주 부처에 의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중도에 계약변경 및 공기 연장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가 조정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대한 적정 수준의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계약법, 조달제도 등 법제도 정비가 긴요

---

## 8. MICE[국제회의기획] · 전시주최자

---

- 상설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 도입
  - 인천, 김포공항 및 서울역 등 교통요지에 행사 안내 및 국제행사 참석자 편의제공\*을 위한 MICE 통합 데스크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대 가능 수량 한정 및 임대기관의 미온적 협조로 실행이 어려운 상황
    - \* 행사·교통·숙박·투어 등 각종 안내, 로밍폰 렌탈·렌터카·비즈니스 센터·수행통역 섭외 등 업무 관련 서비스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련 예산 반영(2014년) 등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임대기관 소관 부처와 상설 MICE 통합 컨시어지 데스크를 공동으로 도입할 필요

## □ 전시서비스 수출지원

- 국내 전시회의 해외진출에 대한 예산·행정지원 부재 및 업계의 해외 네트워크·재정적 한계로 인해 기업 수출 지원 목적의 전시회 해외진출이 부진한 상황
- 전시서비스 수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전시회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
  - 전시지원 예산의 확대 및 지원방법을 다양화하면서 전시회의 대형화보다는 전시회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통한 전문화 추구
  - 전시서비스수출(한국브랜드전시회의 해외개최지원)을 통해 국부창출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 도모
  - 해외 전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육성
  -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및 대사관 등 해외지부·지사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 강화
  - 전시서비스 수출전문가 매칭을 통한 수출과정 지원 도입 및 해외 주요국가에서 부스 및 바이어유치 등 전시회 개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육성

---

## 9. 프랜차이즈

---

### □ 과도한 규제 개선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가맹점의 중요 관리 요소인 점포환경의 개선을 제한하고 있으나 위생을 고려할 때 점포 개설 후 7년이 경과한 경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명분으로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및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쟁 제한적 조치이므로 영업지역 침해 문제는 가급적 업계 자율규제에 의해 해결하도록 할 필요
- 가맹점은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개정 필요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 가맹본부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교육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여 가맹사업 관련 분쟁 예방을 도모할 필요
- 적정 운영 시스템을 갖춘 가맹본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운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필요
- 가맹점사업자피해구제 및 가맹사업자 복리 도모를 위한 가맹사업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마련 필요

○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 제과점 및 음식점업의 경우 일정거리 이내 출점금지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가맹점창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 브랜드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역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



---

## 10. 미술

---

- 한국 미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책 마련
  - 국내 화랑의 해외 아트페어 참여지원을 통해 국내 유망 작가의 해외 소개 촉진
  
- 미술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미술 작품을 이용한 일부 정치인·기업인의 부정 행위로 시장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 미술관련 교양프로그램 실시 및 전시 확대 지원 등을 통한 언론 매체 보도 유도 등 인식전환 노력 필요
  
- 미술 작품 감상 및 구매자에 대한 소득공제
  -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의 소득 중 일정 소득 이상을 미술 작품 감상 및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
  
- 미술 유통 시장 활성화
  - 미술 작품 전시·판매 등 유통에 대한 지원
    - 현행 미술시장 지원은 콘텐츠 생산자인 작가 지원에 치중되고 있으며, 미술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작품 전시·판매 등에 대한 지원 미비
    -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기금 지원 대상에 화랑 기획전을 포함시켜 양질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작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 미술관 또는 국공립 기관이 미술 작품을 구매할 경우 화랑을 통한 구입을 권장
- 미술품 장식 공모 사업에 화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화랑의 유통 경로 확대

□ 해외 미술상의 국내 유입 지원책 마련

- 국내 아트페어 등을 통해 해외 구매자가 미술 작품을 구입할 경우 기타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

---

## 11. 골프

---

- 골프에 대한 차별적 과세 제도 폐지
  - 골프장 토지보유세(4%)는 승마, 스키, 요트 등 여타 스포츠와 비교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일반적인 수준인 0.2%~0.4%로 낮출 필요
  - 건전한 스포츠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1회입장 1만 2천원)는 사행성 산업인 내국인 경마장(1천원), 경륜장(400원) 등과 비교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를 대폭 낮출 필요
  
- 골프 대중화 및 민간 사업자 자율성 침해 규제 해소
  - 골프장은 현행 회원제(회원 예약금 발생) 및 대중제 2개 종류로만 분류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중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예약금 반환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작용 초래
  - 골프장 분류를 폐쇄형 회원제(고급), 일반 골프장 및 퍼블릭 골프장(생활체육시설)으로 3개로 분류하여 골프 대중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
  
- 골프장 인프라 확충 및 타용도 전환 허용
  - 골프장 내 주택 및 숙박시설 건립 허용
    - 골프장 내 숙박을 통한 관광상품 연계 확대 도모
  - 골프장 시설의 타용도 전환 허용
    - 골프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개발된 대규모 부지를 관광시설, 귀농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등으로 전환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화 도모

## 12. 연구개발

### □ 차별적인 연구개발 지원 세제 개선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국가 R&D 사업 등에 많은 기여
- 그러나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이 제조기업의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위주로 부여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성장에 한계
  - 일례로 기업부설 연구소가 적용 받고 있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구개발용 기자재·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업부설연구소 수준의 세제 지원을 적용하여, 제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

### □ 용역사업 성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

-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의 필요에 의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에 의뢰하여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는 용역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로 기업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기술개발을 하되 동 기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을 필요로하는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므로 일반 용역 사업과 달리 이윤 불인정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는 기업의 필요와 관계 없이 국가의 의뢰에 의해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용역사업 성격)도 존재
- 이러한 용역사업 성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윤 인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산 수립시부터 사업 성격에 맞게 용역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

#### □ 연구개발서비스 대가 기준 마련

- 공공·민간의 연구개발 아웃소싱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발주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적정대가를 받기가 어려움
- 현실에 부합하는 용역대가를 산정·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서비스 대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

#### □ 공공 연구개발서비스 정책 단계적 축소

- 중소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저가로 연구 개발 관련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
-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산업 기술 인프라 구축과 관리·감시 위주의 역할 수행으로 제한하고 공공지원 연구 개발 서비스는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이양할 필요

## 13. 지식재산서비스

- 공공기관의 지식재산서비스시장 참여 제한 및 민간 참여 장려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하여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공공기관 우위 시장으로 민간 업체 성장기회 부족
    - \* 특허청, 특허정보원, 발명진흥회 등
  -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기존 서비스의 민간 이양을 추진할 필요
  -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은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80%이상), 웹스 및 아이피솔루션 등 3개사가 독점 수주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및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 역량있는 기술분야별, 산업재산권별 전문역량을 갖춘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업체를 발굴하여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자를 다각화할 필요
      - \* 웹스(2005년), 아이피솔루션(2008년) 지정 후 신규 지정 없음
- 창업 및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지식재산서비스 연계
  -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창업 및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 \* 창업사관학교, 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중소기업컨설팅 등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의 한 분야로 '지식재산전략'을 포함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타당성 평가와 함께 특허정보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낮출 필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성화 및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부처 신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 2011년 설치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부처로 부터 업무 담당자를 파견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파견자 위주 운영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아 역할 수행에 한계
    -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관리에서 총리실 관리 기관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들이 연속성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특허청 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담당자는 1명에 불과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담당할 과를 신설하여 연속성있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집행 필요

## 14. HR[인적자원서비스]

### □ 파견제도 관련 규제의 현실화

- 현행 파견법은 파견 대상업무를 32개 종류로 한정하고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 초래 및 근로자 전문성 배양에 한계
  - 파견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폐지
- 파견기업에 중소기업 기준 완화 적용
  - 현행 파견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임
  - 파견 근로자는 사용업체의 인력 운용 전략에 따라 고용 상태가 유동적이므로 파견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파견 기업의 매출 중 대부분은 근로자의 급여 등 직접인건비로 지출되므로 실질적인 파견기업의 매출로 보기 곤란
  - 파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내부관리 인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매출액 산정시 직접인건비 지출액은 제외할 필요
- 정규직 채용 목적 파견 제도 도입
  - 정규직 채용 목적 파견이란, 정규직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파견기업이 1차적으로 선발하여 사용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하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파견기간 동안에 대한 평가를 거쳐 파견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써 일본에서는 '소개예정파견'이란 명칭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 동 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정규직 채용 기회가 부여되고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손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되므로 도입이 바람직

## □ 인적자원서비스업 선진화

### ○ 무허가 파견업체 단속 및 퇴출 조치 강화

- 상시 특별단속반 가동과 무허가 사용 및 공급 신고 포상제 운영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파견근로자 사용 기업에 대한 적법사용 권장

### ○ 합법 파견기업의 지도 점검 완화(교육 및 계도 위주)

- 처벌위주의 행정처분이 아닌 개선명령·시정지시를 통한 계도를 통해 적법사업자의 사업 위축 및 불법·무허가 사업자 양산 방지

### ○ 파견사업자 의무교육 진행

- 매년 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준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불법·무허가 파견 방지 도모

### ○ 파견사업자 전문화 및 대형화 지원

- 조직·규모·시스템을 갖춘 파견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문화 및 대형화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성장과 이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 ○ 파견 조사 및 연구에 파견사업자 참여

- 파견관련 조사, 연구, 정책 수립 시 파견사업자 참여 상시화를 통해 업권의 현실에 맞는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적법사업체 성장 도모

---

## 15. 케이블TV

---

- 통신사-방송 결합상품의 저가 마케팅 억제
  - 핸드폰 가입자에 대한 IPTV 방송 무료제공 마케팅으로 유료방송시장 황폐화
  - 이동통신시장의 혼탁경쟁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에 악영향 우려
  
- 시장독과점 방지를 위한 위성방송·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도입
  - 현행 방송법상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만 합산하여 규제
  - 사실상 독점시장인 위성방송과 유료방송 상품 결합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미비한 상황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한 위성방송·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필요
  
- 케이블TV 디지털방송 전환 촉진용 방송장비 및 수신장비 (셋톱박스) 도입에 대한 세제 지원
  - 지상파방송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2012년말 디지털방송 전환을 완료한데 반해, 유료방송의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800만명 이상 잔존하고 있는 실정
  - 저소득층 사용자가 많은 케이블TV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송장비 및 셋톱박스 도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을 촉진할 필요

## 16. 리츠

- 리츠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완화
  - 리츠가 형식적 상장요건(자본금 100억원 등)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이유로 상장을 거부하는 관행 상존
  - 리츠는 상장과 공모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코스닥에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 리츠 지방세 감면 항구화
    - 현행 리츠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30% 감면, 대도시 지역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 배제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이 도래('14년말)할 경우 리츠 수익률 악화 우려
    -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항구화를 통해 투자 안정성 확보 필요
  - 임대주택리츠의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도입
    - 임대주택시장 확대 등 사회적 의의가 큰 임대주택 리츠가 발행한 채권이나 해당 리츠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ABS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리츠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필요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 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및 법인세를 이연하여 출자자와 리츠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자기관리리츠의 법인세 감면

- 리츠는 실체가 없는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및 임직원이 상근하는 실체형 리츠인 자기관리리츠로 구분되며, 모든 형태의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법인세를 감면(100% 소득공제)받는 반면 자기관리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애로 발생
- 자기관리리츠의 경제적 실질은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와 마찬가지로 투자기구이므로 동일하게 법인세를 감면할 필요

## 17. 기타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 등

- 서비스산업 FTA 활용역량강화센터 설립
  -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복수국가서비스협정(TISA)이 전 WTO회원국을 중심으로 중첩적으로 체결되는 추세에 따라 서비스시장의 직·간접적 개방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민·관 모두 이러한 협정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제조업 분야의 FTA 대응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지원은 활발한 반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
  - 서비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 필요
    - 서비스산업의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해외진출 정책 마련 필요
    - 서비스산업 자체의 해외진출은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결합한 형태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
  - FTA활용역량강화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컨설팅, 기업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 도모
  
- 서비스의 날을 제정하여 서비스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 필요
  - 서비스산업 유공자를 대상으로 훈·포장 및 표창 실시. 끝.